

5. 지역 의견
가. 행정기관 의견

서대문구청장(편입되는 지역)	은평구청장(편입받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가좌동 275-1호(체비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경계에 위치함에 따라 행정구역(구간) 경계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1개의 아파트에 2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향후 재산세 등 재세금을 2개 구청에서 부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암4-2지구11구획 재건축조합에서 건설 중인 남청파인힐아파트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어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 향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을 조정함이 타당함. ○ 또한, 당초 해당지역이 위험절개지로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함.
<p>나. 주민의견 : 거주주민 없음(재건축조합에 서는 찬성)</p> <p>다. 당해 지방의회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찬성 (2001.2.28) 2) 은평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찬성(2001. 5.12) <p>6. 종합의견</p> <p>가. 응암4-2지구11구획에 건설 중인 남청파 인힐아파트(1개동)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의 경계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간 (은평구-서대문구) 경계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으로,</p> <p>나. 만약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1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위치하여, 세금부과·선거구관리·쓰레기처리 등이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별 도로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있어 주민불 편뿐만 아니라 상당한 행정비능률이 예 상되므로,</p> <p>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 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 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p>< 남청파인힐아파트 현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아파트 1개동 86세대, 지하1층 지상 18층 ○ 면적 : 2,305.4m² 	<p>- 은평구 응암동 : 1,507.3m² - 서대문구 북가좌동 : 798.1m²</p> <p>○ 지형특성 :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에 위치하며, 당초 토사로 이루어진 경 사도 60°, 표고차 약 20m, 총연 장 180m의 절개지였으나, 현재 는 평탄화작업을 거쳐 아파트 신 축 중에 있음.</p> <p>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p> <p>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 육위원회가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함.</p> <p>I. 행정사무조사 실시 경위</p> <p>가. 2001년 2월 27일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성규의원 외 40인이 지방자치법 제36 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 교급식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제출.</p> <p>나. 2001년 3월 13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요 구안(의안번호 838)이 원안가결됨.</p> <p>다. 2001년 3월 14일 의장은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요구서”를 우리위원회에 회</p>

<p>부하고 조사계획서 제출을 요청함.</p> <p>라. 2001년 3월 20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실태행정 사무조사계획서”를 제택하여 2001년 3월 21일 의장에게 제출.</p> <p>마. 2001년 3월 27일 제1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하여 가결.</p> <p>II. 행정사무조사 실시상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 있는 영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습관교육을 통한 국민식 생활개선 및 전인적인 인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 일부학교에서 위탁급식운영업체 선정의 불공정, 급식품 구매·점수의 부적정, 불량 우유급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 위탁급식운영업체선정과정, 위탁급식운영 실태 및 각종 규정준수 여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보완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01. 4. 1~2001. 6. 30(3개월간) 3.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지역교육청 ○ 서울시내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 실시 초·중·고 <p>4. 조사경과</p> <p>가. 조사위원회 -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1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유준상 ○ 위원 조양호 ○ 위원 김성규 ○ 위원 김성호 ○ 위원 김성환 ○ 위원 김판길 ○ 위원 노영석 ○ 위원 류진영 ○ 위원 유대운 ○ 위원 이강진 ○ 위원 이동진 ○ 위원 차성환 ○ 위원 길기연 ○ 위원 박주웅 ○ 위원 이성구 <p>나. 사무보조요원 - 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윤병국 ○ 5급 이광수, 6급 윤종수, 7급 이근주, 9급 박향, 심선영 <p>다. 조사일정</p>
--	---

일 시	조사활동내역	장 소	조사방법
2001. 4.24(화) 10:00~18:00	○ 송파중학교 현장출장조사 및 서류검증	○ 현장	○ 현황보고청취 ○ 현장 확인 ○ 자료요구
2001. 4.25(수) 10:00~18:00	○ 고명중학교 현장출장조사 및 서류검증	〃	〃
2001. 4.28(토)	○ 자료제출요구 -송파중학교	〃	
2001. 5. 2(수)	○ 자료제출요구 -동원중학교 등 36개교	〃	
2001. 5.25(금) 09:30~18:00	○ 신동중, 불광중 현장출장 조사 및 서류검증	〃	○ 현황보고청취 ○ 현장 확인 ○ 자료요구

일 시	조사 활동내역	장 소	조사 방법
2001. 6.27(수) 09:30 ~ 18:00	○ 삼정중 현장 출장 조사 및 서류 검증	"	"
2001. 9.12(수) 14:00	○ 학교 급식 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문화교육 위원회 회의실	○ 조사보고서 채택

III. 조사 결과

1. 학교 급식 현황 (2000. 6월 현재)

구 분	학 교 수	급식 실시 학교	미 실시 학교	비 고
계	1,197	1,024(85.5%)	173(14.5%)	
초등학교	536	536(100%)	0	
중 학 교	354	204(57.6%)	150(42.4%)	
고등학교	279	259(92.8%)	20(7.2%)	
특수학교	28	25(89.3%)	3(10.7%)	

※ 급식 운영 형태

- 직영 : 568교(55.5%) - 초등 531, 중등 0,
고등 12, 특수 25
- 위탁 : 456교(44.5%) - 초등 5, 중등 204,
고등 247, 특수 0

2. 문제점

□ 위탁급식 계약 내용 부실

○ '98. 11. 12 교육감이 각 학교에 시달한 "운영 위탁급식 시행요령 및 유의사항"에 의하면 "위탁급식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미계약사항에 대한 업체와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소지가 있으며 계약서 내용도 각 학교마다 달리 작성하고 있어 표준 계약서의 마련이 필요함.

<계약서 작성 주요 누락 사례>

- 급식비 중 순수 식재료비 비율 명시 및 원가 계산서 요구 누락
- 위탁업체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배치 관계 명시 누락
- 위탁업체의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산업재해 보상 등 책임주체 명시 누락

- 위탁업체의 식자재 검수 시 학교 직원이 공동 검수할 수 있는 사항 누락
- 급식소에 종사하는 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자, 배식직원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토록 하는 사항 누락

- 위탁업체가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소에 매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는 사항 누락

□ 위탁업체의 시설비 과다 투자로 인한 문제점
○ 급식위탁업체가 급식시설 설치에 전액 투자하거나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에 부담을 하 고 기부채납을 할 경우 급식공급 계약기간 내에 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으로 급식 단가를 상향조정하거나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급식비에 시설 분담금을 포함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식자재 검수 미흡

<p>○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 받기 위하여 식자재 검수 시 학교직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저가의 불량제품이나 무허가 원료의 반입을 차단해야 하니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식자재가 도착하여 검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식자재 검수 결과에 대한 학교측의 기록근거가 전혀 없으며, 업체소속 영양사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자재를 형식적으로 접수받아 조치하고 있음.</p> <p>□ 급식비 수납 등 회계관리 부적정</p> <p>○ 급식비의 수납, 정수결의, 지출, 미납자관리 등 회계관리 업무를 학교에서 담당처리하여야 함에도 미납자관리 등 일부 업무는 업무과중을 평계로 업체에서 관리하는 사례가 있음.</p> <p>□ 급식품 납품관리 미흡</p> <p>○ 식품납품시 육안검수를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부정, 불량, 유해 및 무허가 식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육류납품시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를 철저히 징구하여 요구한 제품이 납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p> <p>□ 식품조리 부적정</p> <p>○ 식품을 조리할 시 60cm 이상의 조리대에서 취급하여 바닥으로부터의 물 뛰김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바닥에 식품을 방치해 놓고 조리하는 사례가 있었음.</p> <p>□ 급식에 대한 학생 기호도 조사 미이행</p> <p>○ 급식 공급업자는 연2회 이상 급식에 대한 학생 기호도와 반응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작성하는 개선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p> <p>□ 급식위생·안전점검 소홀</p> <p>○ 안전한 급식운영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담당직원은 매일 급식품의 검수, 안전점검, 영양관리,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대부분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회피하고 있음.</p> <p>3. 건의사항</p> <p>○ 위탁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 수립 - 현행 위탁급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급식의 내용과 결 향상을 도모(검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급식업체의 시설투자 적정규모 • 위탁급식업체 투자비용 대비 적정이율 범위 • 적정 식재료비 및 급식비 산정 • 표준식단 작성 • 위탁 운영과 직영의 장단점 분석 • 기타사항 <p>○ 위탁급식 표준계약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마다 계약서 작성에 통일성을 기하고 필수 계약사항 누락으로 인한 분쟁 발생 요인 사전차단 <p>○ 식자재 검수 및 조리과정에 학부모 참여방안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식자재 공급 투명성 확보 및 안전한 급식운영 <p>○ 영양사 학교소속 직원으로 전환배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품 검수·조리 등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급식에 대한 책임성 증대 <p>○ 위생·안전 점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에 의한 질병 예방 <p>○ 학교와 학부모의 급식기호도 조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공급업자의 급식기호도 조사가 형식에 치우치거나 실제적으로 이행치 않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가 급식위탁업체와는 별도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기호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하여 균형적인 영양 식단 유지 <p>○ 학교급식품 납품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품 검수강화, 관련서류 비치 및 확인을 통한 부정·불량 급식품 납품 극복 <p>IV. 결론</p> <p>본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여 개선대책 마련과 급식업무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도록 함.</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